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2022.06.01적용)

[자료제공 : (사)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 매립지 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30km	35km	40km	50km	60km	비 고	
건설 폐 재 류	24톤 덤프 트럭	중량 기준 (1ton)	상차비	3,520	3,520	3,520	3,520	3,520	페콘크리트, 페아스팔트 콘트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운반비	15,990	17,870	19,670	23,380	27,020	
			계	19,510	21,390	23,190	26,900	30,540	
	15톤 덤프 트럭	중량 기준 (1ton)	상차비	3,520	3,520	3,520	3,520	3,520	
			운반비	18,600	20,930	23,330	28,150	32,800	
			계	22,120	24,450	26,850	31,670	36,320	
	4.5톤 덤프 트럭	중량 기준 (1ton)	상차비	3,520	3,520	3,520	3,520	3,520	
			운반비	32,160	36,720	41,340	51,030	60,680	
			계	35,680	40,240	44,860	54,550	64,200	
혼 합 건설 폐 기 물	24톤 암롤 트럭	중량 기준 (1ton)	상차비	5,810	5,810	5,810	5,810	5,810	혼합건설폐기물 (매립지반입대상폐기물 포함)
			운반비	56,690	60,510	64,270	72,400	79,820	
			계	62,500	66,320	70,080	78,210	85,630	
	16톤 암롤 트럭	중량 기준 (1ton)	상차비	5,810	5,810	5,810	5,810	5,810	
			운반비	68,760	73,790	80,020	90,530	102,300	
			계	74,570	79,600	85,830	96,340	108,110	

- 주) 1. 본 수집운반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2021.12.1)"예정가격 작성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1.7)"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음.
2.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비 등의 시중조사단가 기준과 2022년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3. 상기 단가는 이윤,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수집운반비, 매립지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4. 건설폐기물의 경우 적재 비중은 호트러진상태로서 1.6 톤/㎡,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 적재 비중은 0.63톤/㎡을 기준으로 하였음.
5.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24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15.03㎡), 15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9.39㎡), 4.5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2.82㎡)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혼합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24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30㎡), 16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20㎡)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6.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 비용으로 계산하였음.
7. 혼합건설폐기물의 매립지반입료 산출은 중량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톤)+반입료전액(톤), 부피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반입료전액(톤)× 비중(0.63톤/㎡)]
8.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지역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30km이하는 30km 금액을 기본으로 함.
9. 운반거리가 60km를 초과하거나 적용거리 중간에 있을 경우 적용단가는 직선보간법에의하여 산정함.  
 (60km를 초과하는 경우 50km와 60km 사이의 금액을 km당으로 환산한금액을 초과거리에 곱하여 가산함)  
 예시) 건설폐기물(24톤 덤프) 60km이상 km당 단가 : [27,020(60km운반비)-23,380(50km운반비)]÷10km = 364원  
 → 70km 중간처리대상폐기물의 운반비는 27,020원(60km운반비)+(364원 × 10km) = 30,660원

Data - Information - Knowledge와 연계된 지능형 물가네트워크 [www.kprc.or.kr](http://www.kprc.or.kr)

전문가격조사기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월간 물가지료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필수자료입니다.

☎ 02)799-0750

기회재정부 허가 제24호  
 설립 한국물가협회

■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자료제공 : 한국건설자원협회]

1  
공사

1.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단위 : 원/톤)

배출지	품명	적용범위	적용단가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페콘크리트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페콘크리트	29,396
	페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페아스팔트콘크리트	31,002

2. 재건축·재개발 공사

(단위 : 원/톤)

배출지	품명	적용범위	적용단가
재건축·재개발 공사 (주택·아파트 등 철거·해체 공사)	건설폐재류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에서 페콘크리트, 페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48,021
	건설오니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	59,876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68,563

3.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단위 : 원/톤)

배출지	품명	적용범위	적용단가
재건축·재개발 공사 (주택·아파트 등 철거·해체 공사)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 폐기물(폐유리, 페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 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168,424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 폐샌드위치판넬은 주로 난연성 재료 또는 폐단열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폐판넬과 처리방법 및 단가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단가 적용불가(폐샌드위치판넬 처리단가는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필요)	173,154

[해설]

- 동 처리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3호(2023.6.16) "예정가격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3.2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
-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 처리대상폐기물의 규격이 80\*80cm 이상으로서 별도의 소할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15 '대형브레이크' 품 등을 참고하여 소할품의 별도 계상이 필요함
-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페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
-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페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 등으로 설계하여서는 안 되며,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됨(다만, 단가를 예외적용 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
-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판매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2025.1.1부터 적용)

Data - Information - Knowledge와 연계된  
지능형 물가네트워크 [www.kprc.or.kr](http://www.kprc.or.kr)

전문가격조사기관  
원가계산용역기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도와드립니다.**

02)799-0810

기획재정부 허가 제24호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자원절약 · 환경보호**

**한국건설자원협회**  
<http://www.koras.org>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27길, 2, 일동제약B/D 3층  
전화 : (02)3476-7787(代)  
팩스 : (02)3476-8464